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

제출년월일 : '98. 9. P.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 21세기 본격 자치화·지방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정비하고
- 조직과 인력의 과감한 축소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당면 경제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이며
- 직위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구로 개편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기존의 2실 14과(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재무과, 지역개발과, 관광문화과, 지적과, 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상공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2실 7과(기획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임업경영과, 건설과, 도시경제과)로 축소조정
- 지역개발과, 상공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
 - 민원봉사실과 지적과를 통합하여 종합민원실로 조정
 - 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환경복지과로 조정
 - 농정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관광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산림과를 임업경영과로, 도시과를 도시경제과로 명칭변경
 - 계제 폐지에 따라 실과 밑에 그하부조직으로 계를 두는 규정 폐지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평창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임업경영과, 건설과, 도시경제과를 둔다

제3조(기획실)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2. 군정발전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
3. 행정실적 심사분석
4.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5. 공약사항, 지시사항(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군수) 처리
6. 군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제교역 및 해외교류지원과 국제 자매결연업무에 관한 사항
8.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연구(경영소득사업 등)
9. 법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조정
10.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심사 및 제정, 개폐, 공포
11. 소송·행정심판사무의 처리 및 통제
12. 공무원 소청에 관한 사항
13. 예산편성·운영 및 예산집행의 감독
14.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15. 자체결산검사
16.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17. 군정시책의 홍보(행정광고)선전
18. 방송관련 이벤트행사 유치 등 신문, 방송 관련사항
19. 지역홍보대책위원회 운영
20. 군보발간에 관한 사항
21. 군사 편찬 발간
22. 국·도·군정 영상제작 및 배포, 기록관리
23. 기자실운영 및 기자재 관리
24.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
25. 통계(일반통계, 농업통계, 경제통계) 업무
26. 군 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27.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28. 공무원 비위조사
29.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30.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기획·법무·예산·공보·통계·감사행정에 관한 사항

제4조(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민원실의 설치운영 및 민원공무원 복무기강 지휘 감독
2. 민원서류의 수발통제
3. 일반여권, 여행증명서 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4.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제도 연구개선
5. 행정규제 완화 및 쇄신 주관, 국민편의 시책개발
6. 행정서사 및 인장업 지도·감독
7. 호적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8. 가로등 사후관리
9. 지적업무의 기획·조정

10.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결정·공고
11. 택지소유 상한제·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13. 토지거래 규제(허가·신고) 업무
14.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업무
15. 지적측량 대행법인 감독
16.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용
17. 부동산 실명제 관련업무
18.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19.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20.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21. 주차장 관련업무
22.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련 업무
23.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24. 환경위생
25. 부정불량식품 단속
26. 그밖에 민원, 토지관리, 지적, 운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제5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및 사업소, 읍·면의 직제, 정·현원 인사관리
2.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사무의 관리개선
4. 선거 및 국민투표
5. 반상회 운영지원
6. 사회진흥 종합계획수립 추진
7. 마을회관·창고의 운영 및 유지관리
8. 사회단체육성 및 관리
9. 범죄없는 마을 육성

10. 국민건강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11. 국민운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12. 하부행정기관 지도
13. 각종회의 및 행사, 의전관리
14. 복무단속
15. 보안업무
16. 공무원교육훈련 및 교양에 관한 사항
17.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민방위계획 수립
19.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20. 민방위교육훈련 및 계몽
21. 비상대책 업무
22. 병무업무
23. 팩시밀리 시설운영 유지관리
24. 통신 및 전산보안관리
25. 군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전산시설 개발계획 수립시행
26. 행정전산화계획 수립 집행
27.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재무과) 재무과의 본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
2. 세외수입의 징수
3. 세출예산 경리 결산
4. 공채, 국채, 금융
5. 군 금고의 감독
6. 물품출납보관 처분
7. 원천징수 불입
8.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9. 체비지 및 공공용지 관리 처분
10. 지방세 세원조사
11. 법인세무조사
12. 지방세 과세결정에 관한 사무
13. 그 밖에 재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7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관리 및 지방문화예술의 육성발굴
2. 문예진흥기금 운영 관리
3. 문화원 운영 관리
4. 공연장 지도감독
5. 인쇄, 출판업, 음반·비디오 판매·대여업 관리
6. 종교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도감독
7.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8. 관광지(단지)개발 및 조성계획 조정
9. 관광실태 조사·연구
10.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 육성
11. 관광안내 및 홍보
12. 관광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13. 관광지 자연환경 보존 및 정화사업
14. 관광협회 지도감독
15. 자연공원의 개발 및 지도감독
16. 삭도, 궤도사업에 관한 사항
17.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8. 국민레저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
19. 국제 및 국내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추진 및 준비에 관한 기획조정
20.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육성
21.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관리
22. 청소년 대책업무의 종합기획

23.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2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운영지원
25. 그 밖에 문화, 관광진흥, 체육, 청소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환경복지과) 환경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
3. 신고대상 배출시설 관리 감독
4. 먹는물 관리
5. 유해화학물질 관리
6. 폐기물관리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7. 공중화장실 관리
8. 일반쓰레기, 분뇨처리종합계획 수립
9.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허가·준공 및 관리업무
10.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
11. 쓰레기종량제 및 폐품자원화운동 추진
12. 저소득주민 생계구호 및 노임취로사업 등 지원관리
13. 재해구호 및 불우이웃돕기
14. 장애인 보호관리
15. 주민의료보호 업무처리
16.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체납처분 승인
17.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기획
18. 노인복지대책
19. 공설, 공원도지 납골당 및 매화장에 관한 사항
20. 가정의례 준수지도
21. 부녀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수립 추진
22.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23. 고아·기아·부랑아·정신박약아의 보호
24. 읍면복지회관, 노인회관, 마을회관, 창고의 운영 및 유지관리
25. 그 밖에 환경·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제9조(임업경영과) 임업경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이용구분조사 및 장기계획 수립시행
2. 양묘 및 조림사업계획 실행
3. 육림 및 산림보육 관리지도
4. 임산물 생산수급 및 반출관리
5. 영림계획 작성 및 운영
6.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7. 주요도로 주변정비사업
8. 목재수급 조절 및 벌채사업 실행
9. 임업진흥촉진지역 및 특수지역개발
10. 산불방지
11. 산림병해충 방제
12. 야생조수 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
13. 수렵장 운영관리
14. 화전정리지 관리 및 산림내 불법건조물 단속
15. 산지정화 및 산행질서 지도·단속
16. 자연휴양림 조성 및 수목원 조성관리
17. 임산물가공·이용 및 유통지도(제재소, 가공공장 등)
18. 임업관계단체 육성지도(산림조합, 독립가, 후계자, 푸른숲선도원등)
19. 산주교육 및 임업기술 지도
20. 그 밖에 산림행정 및 임업경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자연자원의 보존이용개발
2. 치수사업 계획수립 실시
3. 수자원 개발

4. 소규모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교량개발 계획수립 실시와 허가 및 공사감독
6. 온천지구지정 및 개발관련 업무
7. 접도구역 관리
8. 농지개발 및 농업용 시설
9. 군 건설종합계획 수립
10. 토지이용 계획수립
11. 농업용수개발
12. 경지정리 및 개간
13. 관개시설 개보수
14. 개간허가 및 지도
15. 각종 농지개량조사의 집행 감독
16. 정주권 개발업무
17. 토목공사의 측량설계 시공감독
18. 공사의 시행 감독
19. 지역단위 재난·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
20.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 구축
21. 취약지 대책
22. 건설, 건축 등 군 및 읍·면 발주공사의 관리·조정·감독등 부실시공 방지
23. 읍·면 발주공사 설계 지도 감독
24. 비 사업부서 발주공사 설계용역 납품검토 및 현장 기술 감독
25. 그 밖에 건설행정 및 재난관리에 관한사항

제11조(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보상
3.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4.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5. 택지개발업무
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관련업무
7. 옥외광고물 관리
8. 소도읍 개발업무
9. 오지개발사업
10.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11. 도시시설물관리 업무
12.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 사업자 지도감독
13. 무허가 건축물 단속
14.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15.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16. 주택자금관리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17.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자재보급 등 주택행정
18. 상·하수도 사업계획 수립시행
19. 수도료징수 및 무허가 수도 단속
20. 수원지 유지관리
21. 음용수 수질관리
22. 간이상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23.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4.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
25. 수출진흥과 과학기술진흥
26. 통상에 관한 사항 총괄
27. 농공단지조성 및 육성지도
28. 중소기업 육성지도
29.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30. 광공업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31. 노동 및 노정
32. 노동 및 사회사업단체의 지도 감독
33. 실업대책

36. 광공업등록 및 광산개발업무
37.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
38. 시장개설 및 관리
39. 공산품 품질관리
40.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가스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
41. 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 특정설비 제조업 등) 허가 및 지도감독
42.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43. 가스시설 시공자 등록업무
44. 시공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45. 가스안전관리 제도·홍보
46. 그 밖에 도시행정 및 건축, 상하수도, 지역경제, 상공, 가스에 관한사항

제12조(사무분장) 세부적인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평창군의회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의 "의사계장"을 "의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중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개발과장, 관광문화과장, 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상공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자치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복지과장, 임업경영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평창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2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평창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기획감사실·복지·농정·산림·건설과장"을 "기획실·종합민원실·환경복지·임업경영·건설과장"으로 하며, "서무계장"을 "서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중 "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5호 및 제10호 서식중 "계장"을 "담당주사"로 "계"를 "취급자"로 한다.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총무계장"을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평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문화체육계장"을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지적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업무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복지과장"을 "환경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계장"을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복지과장"을 "환경복지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2항중 "사회복지계장"을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11조제3항중 "복지과장"을 "환경복지과장"으로 "복지과 사회복지계장"을 "환경복지과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 복지과장"을 "기획실장, 환경복지과장"으로 동조제6항중 "사회복지계장을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9조제1항중 "복지과장"을 "환경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계장"을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복지과장"을 "환경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계장"을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복지과장"을 "환경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계장"을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군복지과장"을 "군환경복지과장"으로 하며, 제8조중 "기획감사실장, 복지과장"을 "기획실장, 환경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 "복지과장"을 "환경복지과장"으로, "장애인복지 주무계장"을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평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복지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2항중 "여성복지계장"을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평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중 "상공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

평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하천방재계장"을 "하천방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평창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다목중 "토목계장"을 "기반조성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부읍면장"을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평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가족보건계장"을 "가족보건담당주사"로 한다.